

『구미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박교상 의원 외 16명

2. 제안이유

- 저소득층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 - 저소득 주민은 수급자, 한부모, 의사상자 가족으로 함.
-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(안 제3조 ~ 제4조)
 -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임.
 - 지원기준은 교복의 동·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
-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(안 제5조 ~ 제6조)
 - 입학 전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후 시장이 검토후 지원 대상자에 계좌입금
- 지원중단 및 환수(안 제7조 ~ 제8조)
 -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으며, 부당 수령자는 즉시 환수조치

4. 참고사항
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~ 제2조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 저소득 주민은 수급자, 한부모, 의사상자 가족으로 하며,
- 안 제3조 ~ 제4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중 중·고등학교 입학생이 있는 세대에 교복의 동·하복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,
- 안 제5조 ~ 제6조는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으로 입학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, 읍·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접수후 시장이 검토후 지원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지급하며,
- 안 제7조 ~ 제8조는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동일한 성질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고 부당 수령자 환수조치에 관한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저소득 자녀에 대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충주시와 성남시를 비롯해 5개 지자체에서 세대당 20~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, 우리시의 경우 세대당 3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어 2012년 기준, 지급대상자가 500여명으로 1억 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.
- 이와 관련해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과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, 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, 예산이 수반되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.